

#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0. 16 —————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7. 10. 17

다. 상정일자 : 제61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2차 총무사회위원회(97. 10. 30) 상정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장영석 보건소 서무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보건소 설치운영의 근거 법률이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 
95. 12. 29 법률 제5101호로 개정됨에 따른 근거 법률조항을 변경하기 위함

#### 나. 주요골자

##### ○ 목적

- 현행 :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  
시행령 제5조(조례 제1조)
- 개정 :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 
시행령 제7조(안 제1호)

##### ○ 동 사무장 유고시 공인관수자 지정 및 관수자와 사용자간 인계인수 대상공인을 민원전용 동장직인에서 민원실 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원을 추가함.

##### ○ 업무

- 현행 :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(조례 제3조)
- 개정 :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(안 제3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 개정조례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. 12. 29 법률 제5101호로 전문개정하여 96. 7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하구 보건소 설치조례 내용중 보건소의 설치운영 및 업무관련 근거 법률조항을 보건소법 조항에서 지역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 시키는 사항으로서 개정이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선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### 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### 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